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허민숙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가 해소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산모의 의료기관 회피가 우려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태생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이에 익명출산 및 비밀출산 관련 논쟁의 지점을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023년 6월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출생통보제¹⁾가 도입되었다.

지금까지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였지만, 이제 국가가 공동책임자로 그 임무를 부여 받은 것이다.

한편, 출생통보제 도입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산전진단 또는 출산을 회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십대 청소년과 같이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등의 임산부는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촉발하는 논쟁의 지점을 살펴보고, 우리사회가 신중하고 침착하게 숙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건강심사보험평가원이 지자체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하는 제도이다.

2 출생통보제와 비밀출산(익명출산)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를 국가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가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등록될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전망이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신고에서 누락되는 아동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때문에 출생통보제의 보완 또는 병행 입법으로 보호출산제가 논의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해외에서 도입된 익명출산제, 그리고 비밀출산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자신의 임신·출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가 익명을 보장받은 채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출생아 유기 및 영아살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일견 타당하고 유익해 보이는 이 제도는 그러나 여러 논쟁의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1) 위기임신과 영아살해

모든 임신·출산은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인 임산부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형화하기 어렵지만,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로 가족으로부터 비난받고, 태아의 친부로부터 외면받았으며, 본인 역시 임신을 원치 않았고, 또 곧 출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경우이다.²⁾ 성착취에 의한 임신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 폭력과 학대로 점철된 삶의 여건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출산 직후 24시간 이내에 출생아를 살해하거나 유기,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영아살해는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장실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나홀로 출산, 아이 울음소리가 패닉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이들은 공포와 절망으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다.³⁾

한편, 영아살해는 생모의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 1980년~2000년의 기간 동안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자녀살해 사건에서 출생 이후 24시간 이내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영아 살해범들은 26세 이상, 기혼여성, 의료기관에서의 정기적 진단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로 판명되었다.⁴⁾

(2) 익명출산제도

익명출산(Anonymous Birth)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임신·출산에서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영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프랑스⁵⁾, 이탈리아

아⁶⁾, 룩셈부르크⁷⁾, 오스트리아⁸⁾의 익명출산제도는 산모로 하여금 의료진의 조력을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나홀로 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고, 출산 직후에 벌어질지 모를 영아살해를 막기 위함이다.

익명출산제도는 무엇보다 임신유지와 출산에 대한 산모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출생통보제의 보완 또는 병행 입법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및 산전·후 검진을 기피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익명출산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제도 도입 국가 내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태아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출생한 자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⁹⁾

(3) 비밀출산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산모에게 안전한 출산 여건을 마련해 주되, 출생아의 태생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제도는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의회는 입법을 통해 2013년 8월 일명 비밀출산(confidential birth, vertrauliche Geburt) 제도를 도입하였다. 비밀출산을 희망하는 산모는

2) Appell, Annette R., “Safe Havens to Abandon Babies, Part II: The Fit”, *Adoption Quarterly*, 6(1), 2002.

3) Hadžimanović, Nataša, “Confidential and Anonymous Birth in National Laws – Useful and Compatibl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parazione e Diritto Civile*, vol.1, 2018, p.2.

4) 같은 글, p. 3에서 재인용

5) Art. 311–25 and Art. 341–1 Code civil

6) Art. 30 no. 1(a) of the Decreto Presidente della Repubblica 3 novembre 2000, no. 39664; Art. 28 no. 5 – 7 of the legge 4 maggio 1983, n. 184

7) Art. 334 para. 4 Code civil

8) Anonyme Geburt, <https://anonymegeburt.at/en/anonymous-birth/> (검색일: 2023.7.2.)

9) Troiano, Stefano, “Understanding and Redefining the Rational of State Policies Allowing Anonymous Birth: A Difficult Balanc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Jurisprudence of the Family*, 4, 2013.

반드시 상담에 참여해야 하고 상담기관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모에 대한 기록은 밀봉되어 국가기관에 보관되나, 자녀가 16세에 이르면 요청에 의해 모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다. 물론 자녀의 요청만으로 이러한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모는 자녀의 열람을 반대할 수 있고, 이처럼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가정법원은 모와 자녀의 이익의 경중, 그 밖의 사안들을 고려하여 자녀의 열람권을 인정하거나 기각한다. 그러나 모가 열람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열람권이 허용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자녀의 알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¹⁰⁾

(4) 딜레마의 해소는 가능한가?

독일의 사례는 절충안이 될 수 있을까? 일정 부분 그렇고 또 그렇지 않다. 모의 열람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알권리가 항상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비밀출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 비밀출산을 보장받는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비밀출산은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임신부의 의료기관 방문을 주저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사안 자체가 모든 쟁점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현실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프랑스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프랑스 역시 산모에게 모의 신상 정보를 남길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가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기록을 남기기로 결정한 경우 임신부는 자신 및 친부의 유전병 등의 건강상태, 출생 당시의 여건 등의 기록

을 남길 수 있고, 이는 밀봉되어 Conseil national에 보관된다. Conseil national은 익명출산 산모와 출생자녀 지원 기관으로 산모는 후에 이 기관을 통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자녀 역시 태생 관련 기록 열람권을 요청할 수 있다. 즉 모의 신상을 제외한 건강정보 및 익명출산의 사유 등 비식별정보는 자녀에게 공개된다.¹¹⁾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아닌 모의 의지에 따라,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의 영구적인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신상 정보를 남기도록 독려하고 기회를 보장하되, 종용하지 않고 모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다.

(5) 국제사회의 판단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프랑스)를 제소한 사건(Odièvre v. France)에서 익명출산제도가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가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바로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¹²⁾

한편,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한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아동에 대한 익명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의 비밀출산제 도입 가능성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¹³⁾

10) 독일의 「임신갈등법」(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ratungsg/index.html> (검색일: 2023.7.1.)

11) 프랑스의 「사회적 활동 및 가족법」(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6074069/ (검색일: 2023.7.1.)

12) Troiano, Stefano, 앞의 글, pp.194-196.

13)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KOR/CO/5-6: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3 안전한 출산을 위한 사회적 과제

비밀출산과 익명출산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익명출산이 신생아 유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익명출산을 도입한 이후 오스트리아의 아동 유기가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반론으로 제기되기도 한다.¹⁴⁾ 익명출산 및 비밀출산은 아동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익명출생 아동의 1.5%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추적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도 있다.¹⁵⁾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 모두의 공통적인 바람은 산모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이며, 또한 출생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이다. 여기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돌아서는 산모는 비정하고 무책임하다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지만, 축복과 환대가 아닌 냉대와 두려움 속에서 출산하고, 변변한 산후조리조차 하지 못한 취약한 여건에 놓인 자일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무사히 출생하고 생존하였지만, 태생에 대한 풀리지 않을 의문과 함께 삶의 출발선에 놓여진 어린 생명 역시, 지켜보는 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자, 임신이 축복이 아닌 비난과 고립의 이유가 된 자, 출산 이후의 삶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자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곤경에 빠진 산모와 태아를 위해 위기임신 상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상담과정을 통해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떨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Klier, Claudia M, et al., "Is the introduction of anonymous delivery associated with a reduction of high neonaticide rates in Austria? A retrospec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20(4), 2012.

15) Hadžimanović, Nataša, 앞의 글, p.22, 각주 132에서 재인용.

다. 이러한 상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제 한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여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바람직한 여건에 이르고 사회적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우선인 과제라 주장하는 동안에도 임신·출산으로 위기상황에 내몰릴 산모와 태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생통보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되어야 하고, 출생통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포기하는 취약 임신부 및 태아에 대한 대책은 보다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4 나가며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떠한 결정권도 없이 그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생존하는 것, 태생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보장받는 것, 그 어느 하나도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면서도 우리사회는 이들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되지 않는 그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출생통보제 도입은 출생신고 누락이라는 큰 과제를 해소하면서도, 위기출산 증가 우려를 수반하였다. 이에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선례를 면밀히 참고하고 검토하여, 출생통보제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여기에는 적어도 한국의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친부에 대한 논의 역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